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0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06월 01일

3. 제안이유

○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,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<위임사무 신설>

○ (환경정책과) 야생동물 구조·보호에 관한 사무

- 조난 · 부상 등 야생동물 구조·보호
- 구조 야생동물의 구조관리센터 인계 조치

○ (환경정책과)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

○ (기후대기과)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

-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

-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
-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

○ (산림녹지과)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(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)
-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신고

○ (도로과) 도지사가 지정·고시한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

<위임사무 변경>

○ (자연재난과)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
→ 국가하천·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

○ (환경정책과)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
- 다.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(변경포함)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(허가변경)
→ 다.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(변경포함)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(허가변경), 재위탁 승인
- 거.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
→ 거.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, 처리신고자 행정처분, 재위탁 승인

○ (교통철도과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(시·군내 사업의 한정면허, 수요응답형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업, 전세버스운송사업,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)에 관한 다음의 권한
→ 여객자동차 운수사업(수요응답형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

업, 전세버스운송사업,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)에 관한 다음의 권한

<위임사무 삭제>

○ (에너지과) 발전설비(송배전 부문제외) 1,000kW 이하 규모의 다음 사항

가.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

나.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,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

다. 전기사업의 양수,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·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

라.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, 사업구역의 감소, 과징금 부과·징수

마. 전기사업 허가취소 청문

바.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
사. 공사 신고의 접수

아. 기술기준의 적합명령

5.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 사무의 위임 규정과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3조 및 각 담당부서 업무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음(본 조례 [별표1]).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따라 충청북도의 사무 중 시

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새로운 위임사무의 신설, 현행 위임사무의 변경, 현행 위임사무의 일부를 삭제하여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.

○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 사무 위임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 및 위임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의 이해관계자인 도민과 사무 처리 부서에 충분한 사전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.

붙 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